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220호

중소벤처기업부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개인정보 보호법」제3장제3절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가명정보의 관리 체계 및 제공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가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가명정보책임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관리·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데이터담당부서”란 신청인이 가명처리 및 제공을 요청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4. “적정성 검토”란 처리 목적의 적합성, 위험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사전협의”란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결합전문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결합 목적, 대상 정보의 범위, 가명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24호, 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명정보 관리 체계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교육 및 점검 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가명정보 관리·제공 관련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가명정보책임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각 기관의 가명정보 관리·제공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가명정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가명정보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내 가명정보 관리·제공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기관 내 가명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내부지침 수립
3. 기관 내 가명정보 처리 관련 부서 및 절차·방법 등 안내
4. 가명정보 신청·제공 절차 수립, 신청 접수·분류·이첩 및 처리 현황 관리
5. 가명정보 제공 신청 관련 적합성 검토 및 제공 여부 결정
6. 가명처리 계획의 설명·협의 지원 및 총괄

7. 가명처리가 완료된 가명정보 제공 및 내역 관리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부서·기관 간 협의 등 지원

9. 적정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데이터담당부서의 업무)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신청인의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관리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부서로 한다.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관한 제공 결정·방법·절차·예상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제공방식 검토

2.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 및 범위 검토

3. 가명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신청인 설명·협의

4. 가명정보 제공 신청 관련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처리 실무

5. 처리 목적 달성한 소관 가명정보 파기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관 내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명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명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가명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가명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가명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가명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가명정보의 보호 및 관리·감독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가명정보 관련)
10.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11.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가명정보의 파기 현황 관리·감독

제8조(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제11조에 따른 가명처리,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제13조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과 관련한 업무(이하 “가명정보의 처리 업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제9조(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가명정보책임관은 가명처리 결과 검토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
2. 가명정보책임관 소속 부서의 가명정보 처리 실무담당자
3. 가명처리 관련 기술 또는 법률 등 분야 외부 전문가

③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장 가명정보 제공

제10조(가명정보 제공 신청) ① 가명정보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신청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가명정보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데이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상 가명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인이 요구한 가명처리 방식·수준이 기술적 여건상 수행하기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가명정보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 신청된 가명정보의 제공 권한이 다른 공공기관에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문으로 해당 신청 건을 소관 공공기관으로 이첩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가명정보책임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정보책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가명정보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인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데이터담당부서로 전달해야 한다.

제11조(가명처리)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0조 제6항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 결정을 전달받은 경우 접수한 가명정보 제공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방법·수준·비용 등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가명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신청인에게 제1항의 가명처리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정보책임관이 설명 및 협의를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가명처리 계획을 기반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한다.

제12조(적정성 검토)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1조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위험도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검토에 갈음하여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및 이용 항목의 적합성
2. 위험도 판단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3. 당초 설정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4. 제공 방식 및 처리환경 등 사후 관리 조건 사항
5. 그 밖에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항의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부적정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가명처리 절차를 다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가명정보 제공)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마쳤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해당 검토 결과와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가명정보책임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가명정보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가명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이때,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명정보 이용·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③ 가명정보책임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가명정보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④ 가명정보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방법, 데이터의 양, 제공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가명정보 결합

제14조(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제공 신청)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제공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결합을 위한 가명처리) ① 결합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명처리 시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결합을 위한 적정성 검토) ① 결합을 위한 가명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시 해당 결합 건과 관련한 결합 가명정보 제공기관과 적정성 검토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정보책임관이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제공)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제1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마친 경우 그 검토 결과와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가명정보책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가명정보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공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한 관리

제18조(추가정보의 관리) ① 데이터담당부서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분리하여 보관하고,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추가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부서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총리훈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이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 또는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가명정보 제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소속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은 소속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 신규 ☐ 변경)

접수번호		기존 접수번호(변경시)		접수일	

신청자	조직/부서명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가명정보 활용 목적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 세부 활용 목적 *얼굴 유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과 구매 상품,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예측하기 위한 실시간 응대 전략 수립*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 명칭	
	요청 개인정보 항목	*고객 얼굴사진정보, 구매 상품 카테고리별 금액, 상담 내용 등*
결합 활용 여부	☐ 해당 없음	☐ 결합전문기관 결합 예정 (결합대상정보 :) (이용 예정인 결합전문기관 :)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직접 제공하는지 여부:)
처리 환경	☐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처리환경(☐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 결합전문기관) ☐ 기관 내부 분석 공간 ☐ 기관 외부 반출 ☐ 기타 ( )	
반복 제공 여부	☐ 1회 제공 ☐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한 반복 제공 ( ) 회 예정	
예상 이용기간	반출일로부터 ( )개월 이내 또는 반출일로부터 ~ 년 월 일 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명정보 이용·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장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첨부서류	1.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신청 제목	
책임자	소속 성명 (서명)
배경 및 목적	
활용 데이터 (대상자 수)	
활용 계획 및 방법	
(예상) 활용 기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별지 제3호 서식]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통지서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통지서**

귀하의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명정보책임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제공 승인 [ ] **가명정보 제공 거절 [ ]**

▸ (가명정보 제공 거절 시) 세부 사유 :

접수번호		접수일		
가명정보 책임관	성명		조직/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자	조직/부서명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성명	
가명정보 활용 목적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 세부 활용 목적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 명칭**			
	요청 개인정보 항목			
제공 방법	☐ 외부 반출 ☐ 기관 내 분석공간에 제공 ☐ 결합전문기관에 제공(결합활용 시) ☐ 기타 :			
예상 제공일	( )개월 이내 또는 ~ 년 월 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귀하의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명정보책임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접수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당초 결정기간	~ 년 월 일 까지		
가명정보 책임관	성명		조직/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자	조직/부서명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성명	

가명정보 활용 목적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 세부 활용 목적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 명칭**	
	요청 개인정보 항목	
연장 결정기간		
연장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우편주소 전자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가명처리 계획서

가명처리 계획서

파일 개요						
No	파일관계	파일명	항목 수	데이터 건수	정보주체 수	비고

파일별 상세 가명처리 계획						
No	파일명	항목명	유형[1)]	예시	항목설명	가명처리 계획

1) 정형데이터인 경우 범주형, 수치형 중 택일
비정형데이터인 경우 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CT, MRI, 유전체 등 구체적으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위험성 검토서

위험성 검토서

◈ 가명정보 활용 개요			
가명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			
활용하려는 자	(기관명)	(직위)	(성명)

(1) 기본 위험도 판단		
〈Step 1〉 활용 주체	☐ **내부 활용** - 동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활용 (외부제공 없음) - 직접 활용, 내부 타 부서에 제공, 내부 부서 간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	
	☐ **제3자 제공 (→ Step 2로)** - 타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	
〈Step 2〉 처리 환경 (제3자 제공인 경우만)	☐ **제공기관이 통제 가능한 환경** -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내부 분석공간 등 제공기관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제공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환경**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외부로 반출하여 제공기관이 처리환경을 통제·관리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위험도 자동 도출	〈Step 1〉 내부 활용	➜ ☐ **저위험**
	〈Step 1〉 제3자 제공 + 〈Step 2〉 통제 가능 환경	➜ ☐ **중위험**
	〈Step 1〉 제3자 제공 + 〈Step 2〉 통제 불가능 환경	➜ ☐ **고위험**
	※ 판단 이유 :	

(2) 사례별 위험도 조정		
반복·유사 활용 건	☐ 해당 ☐ 해당 없음	※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 가능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처리환경으로 제공	☐ 해당 ☐ 해당 없음	※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 가능
비정형데이터 포함	☐ 해당 ☐ 해당 없음	※ 기본위험도 상향 조정 권장

(3) 최종 위험도 확정	
조정	☐ 유지 ☐ 상향 ☐ 하향
최종 위험도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종합 검토 결과	

검토일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적정성 검토 결과서

적정성 검토 결과서

접수번호 (또는 처리명칭)						
검토위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검토 대상	☐ 신규 ☐ 보완	
검토 일자	년 월 일	
검토 결과	☐ 적정 (승인) ☐ 조건부 승인 ☐ 부적정 (반려)	
검토 사항	① **가명정보 처리 목적 적합성** -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해당하는가? -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가?	☐ 적정 ☐ 미흡
	② **가명정보 이용항목 적합성** -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만 처리 대상에 포함하였는가?	☐ 적정 ☐ 미흡
	③ **위험도 판단의 적정성** - 활용 주체, 처리 환경, 개별 사례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위험도를 판단하였는가? 판단 근거가 적절한가?	☐ 적정 ☐ 미흡
	④ **가명처리의 적정성 (재식별 위험성)** -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과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처리하였는가? - 가명정보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처리환경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인 재식별 위험성을 충분히 낮추었는가?	☐ 적정 ☐ 미흡
	⑤ **목적 달성 가능성** - 당초 설정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과도한 가명처리로 처리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 적정 ☐ 미흡
검토 의견		
종합 검토 의견 (위원장)		

위와 같이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작성자 **서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가명처리 결과서

가명처리 결과서

1. 공통적으로 적용한 가명처리 방법			
자료형	가명처리 순서		
	가명처리 방법 1	가명처리 방법 2	가명처리 방법 3
결합키			
범주형			
수치형			
기타			

2. 예외적으로 적용한 가명처리 방법					
파일명	항목명	자료형	가명처리 방법1	가명처리 방법 2	가명처리 방법 3

3. 주요 범주형 항목 값 분포 (검토가 필요한 항목만 작성)					
파일명	항목명	값	빈도수	구성비	비고
합계					

4. 주요 수치형 항목 값 분포 (검토가 필요한 항목만 작성)									
파일명	항목명	처리 전				처리 후			
		Min	빈도	Max	빈도	Min	빈도	Max	빈도

5. 비정형데이터 전후 비교 샘플링 (비정형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파일명	항목명(정보영역)	처리 전	처리 후
		※	

[별지 제9호 서식] 가명정보 이용·보호 서약서

가명정보 이용·보호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공받는 가명정보를 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가명정보 제공 조건을 준수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공받은 가명정보는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승인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2.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 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한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는다.

3.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양도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4. 가명정보 접근자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5. 가명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재식별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6.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확인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7.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가명정보와 복제본을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한다.

8.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확인·점검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9.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가명정보 제공 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관(단체)명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가명정보			

20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가명정보 제공 내역 대장

가명정보 제공 내역 대장

연번	접수 번호	신청기관 (단체)명	신청인 (성명/직위)	제공 목적	제공 가명정보 (항목·범위)	제공 결정일	제공일	제공 방법	이용 기간	파기 예정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용서식 제1호] 비정형데이터 추가검수 결과서

비정형데이터 추가검수 결과서

검수 개요			
접수번호 (또는 처리명칭)			
원본 데이터 규모		원본 데이터 크기(용량)	
원본 데이터 포맷		처리 결과 데이터 포맷	
가명처리 적용 기술			

검수 내용				
검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검수 장소				
검수 방식 설명	☐ 전수 검수	☐ 부분 검수	☐ 통계적 표본 검수	☐ 휴리스틱 표본 검수
처리된 결과 확인 사항				
검수 결과				

검증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인)

20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인용서식 제2호] 적정성 검토위원 서약서

적정성 검토위원 서약서

처리명칭	
신청기관	

본인은 상기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 이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구분	이해 관계 내용	예	아니오
1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를 이용할 예정이 있는지		
2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3	가명정보 이용신청자와 고용관계(상근, 비상근/ 공식, 비공식 등)에 있는지		
4	가명정보 이용신청자로부터 본 적정성 검토 비용 외에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6	그 밖에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또는 가명정보 이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본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은 정확히 기술되었으며 만약 평가 진행 중에 의뢰기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동되는 이해상충이 생기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귀 기관에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귀 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인용서식 제3호]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 안전조치 이행 확약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4) 및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동법 시행령 제29조의5)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가명정보 취급자 서약

No	소속	직위	역할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서약함으로써, 본인은 정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합당한 역할과 완전한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자 : 서명(인)

신청기관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인용서식 제4호]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

가명정보·추가정보 처리대장 (제공자)

일련번호	처리일자	관리번호	정보구분	처리구분	처리내역 처리목적 및 내용 / 항목 / 이용기간 / 제공시 받는자를 기재	담당자	책임자
1	25-7-25	25-01	추가정보	생성	• Key + Salt 값으로 해시 생성		
2	25-7-29	25-01	가명정보	생성	• 처리목적 : 비정형데이터 상담내용 NER 처리		
3	25-9-12 ~ 9-19	25-01	가명정보	이용	• 처리목적 : 가명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전수)		
4	25-9-22	25-01	가명정보	제공	• 처리목적 : 과학적연구 (비정형 텍스트 가명처리 솔루션의 개인정보 검출 AI 모델 성능 고도화) • 항목 : 상담식별번호, 상담일시, 상담내역 등 • 이용기간 : 2025.9.0.~12.31. • 제공받는자 : ㈜OOOO		
5	25-9-30	25-01	가명정보 추가정보	파기	• 제공받는자에게 제공 후 내부 보관 가명정보는 파기함		

가명정보·추가정보 처리대장 (이용자)

일련번호	처리일자	관리번호	정보구분	처리구분	처리내역 처리목적 및 내용 / 항목 / 이용기간 / 제공시 받는자를 기재	담당자	책임자
1	25-9-30	25-가-01	가명정보	보관	• 제공기관A로부터 받은 가명정보를 폐쇄망 환경 B에 보관		
2	26-01-02	26-가-01	가명정보	파기	•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가명정보 파기		

가명정보·추가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제공자)

일련번호	신청일자	관리번호	소속(부서)	취급자	취급자IP	처리 내역 및 사유	권한범위	부여/말소일자	담당자	책임자
1	25-7-20	25-01	A팀	홍길동	1.1.1.1	추가정보 처리 권한 부여	생성 조회	25-7-25		
2	25-7-20	25-01	B팀	이순신	1.1.1.2	가명처리 권한 부여	생성 조회	25-7-25		
3	25-9-20	25-01	A팀	홍길동	1.1.1.1	추가정보 파기로 권한 회수	말소	25-9-30		
4	25-9-20	25-01	B팀	이순신	1.1.1.2	가명정보 제공으로 인한 권한 회수	말소	25-9-20		

가명정보·추가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이용자)

일련번호	신청일자	관리번호	소속(부서)	취급자	취급자IP	처리 내역 및 사유	권한범위	부여/말소일자	담당자	책임자
1	25-9-30	25-가-01	마케팅팀	김활용	2.1.2.3	가명정보 분석	조회	25-10-1		
2	25-12-31	25-가-02	마케팅팀	김활용	2.1.2.3	분석 완료로 인한 권한 회수	말소	25-12-31		